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과 장 박형식 서기관 양인수	042-481-8206
	2015년 2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10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등
「2015년 특허심판원 업무계획」 발표 -

- ◆

신속한 심판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한다.

 - 당사자계(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 심판사건의 처리기간 목표를 6개월 이내로 설정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3.15.시행)와 관련된 사건은 우선심판으로 처리
- ◆

정확한 심리를 위해 심판의 전문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심판사건의 기술분야와 심판관의 전공분야를 대응시켜 심판사건 배정
 - 심판쟁점 처리기준 통일 및 심결취소이유 분석·공유를 통한 심판품질 제고
- ◆

무효심결 예고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지재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추진
 - 무효심결 예고제, 특허취소신청제 등 도입, 법원과의 특허요건 판단기준 조화
-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을 조성한다.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 작성을 위해 국립국어원 등과 협력 추진
 -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심판 당사자·대리인의 의견수렴 강화
 - 특허요건 판단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 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제목의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은 2015년 특허심판원의 중점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 2015년 특허심판원은,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 ① 신속한 심판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조기해결
- ② 정확한 심리를 위한 심판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강화
- ③ 권리자 보호강화를 위한 무효심결 예고제 등 제도개선 추진
- ④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 조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 첫째, 기업간의 지재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어, 분쟁해결의 시급성이 강한 당사자계 심판을 우선적으로 6개월 이내로 처리할 예정이다.

○ 당사자계 심판처리가 지연될 경우, 법원의 침해소송,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관세청의 국경조치 등과 관련하여

- 기관 간 판단결과의 상충 가능성이 증가하여 국민의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둘째,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일본에 비하여 약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특허권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 ('13년 기준) 한국 49.2%, 일본 20.4%

○ 심판원은 다각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 심리 진행중 특허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권리자에게 추가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
- 특허등록후 3개월내 누구나 신청하여 심판원에서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법원과의 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특허 요건 판단기준 조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그 외에도 심판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전공분야에 맞는 사건 배정, 심판쟁점 처리기준 통일, 심결취소이유 분석·공유를 통한 심판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 작성, 판단기준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결론적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 특허심판원은 올해 '15년 중점 추진과제인

- 신속·정확한 분쟁해결
- 심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심판품질 강화
- 권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 우리 기업들이 금융, 투자, 거래, 라이선스 등에 지재권을 활용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신속한 심판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한다.

◇ 현재의 평균 심판처리기간은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서는 심판처리기간의 지속적 단축노력 필요

* (중국) 무효심판 ⇨ 7개월, 거절결정불복심판 ⇨ 13.7개월('13년)

* (일본) 무효심판 ⇨ 6개월, 거절결정불복심판 ⇨ 12개월('13년)

□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처리기간 목표는 6개월 이내

- 2015년 심판처리기간 목표를 당사자계(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와 결정계(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다투는 사건)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 분쟁해결의 시급성이 강한 당사자계 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목표를 6개월 이내로 설정

< 당사자계 6개월 목표 설정 이유 >

- 당사자계 심판은 심결의 내용이 법원(침해소송),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 행위 조사), 관세청(국경조치), 식약처(제네릭 의약품 시판방지) 등에서 원용되어 특허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6개월 내 처리가 필요
 - * 법원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 등의 평균처리기간은 3~4개월
 -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결정후 6개월 내 판정
- 당사자계 심판처리가 지연될 경우, 타 기관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기관 간 판단결과의 상충 가능성 증가로 국민의 혼선초래 우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사건은 우선심판대상에 포함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15.3.15. 시행예정)에 맞추어 관련 심판사건은 우선심판으로 처리하여 제약업계를 지원할 계획
-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제한(최대 12개월)과 관련하여 제약업계의 심판청구 증가 및 신속한 심결 요구에 대응

2. 정확한 심리를 위해 심판의 전문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정확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판결과의 신뢰도·예측 가능성 제고(심판품질 향상) 대책 필요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비율은 '14년 14.5%까지 낮아졌으나,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되는 비율은 25.4%로 다소 높아진 상황

< 제소율 및 심결 취소율 >

구 분	'10	'11	'12	'13	'14
제소율(%)	15.7	17.3	16.5	15.3	14.5
심결취소율(%)	21.3	22.6	22.8	20.9	25.4

□ 심판사건의 기술분야와 심판관의 전공분야 매칭 강화

- 심판사건의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당분야 전공 심판관을 충원·배치하여 심판전문성을 강화할 계획
- 심판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신기술 교육을 확대할 예정

□ 심판쟁점 처리기준 통일 및 심결취소 이유·분석 공유강화

- 심결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별 일부 판단차이가 있는 심판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처리지침을 정비할 계획
-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 된 사건에 대하여 유형별, 쟁점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심판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

□ 심판품질 향상을 위한 구술심리 강화

-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 구술심리(영상 구술심리 포함)를 적극 활용할 계획

* '06년 처음 도입되어 '14년 총633건 구술심리 개최, 또한 '14.4월부터 서울-대전간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영 중('14년 총 105회 실시)

3. 무효심결 예고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 연평균 50%에 달하는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일본에 비하여 약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특허권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 특허심판원이 처리한 전체 무효심판 심결건수 중 인용(무효청구 성립) 심결건수의 비율

◇ “무효심판을 통한 부실권리의 방지와 함께 특허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요건 판단기준 조화 등을 추진할 계획

□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심리 진행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권리자에게 추가 정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 특허등록후 3개월내 누구나 신청하여 심판원에서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 등 제도개선
- 법원과의 특허요건 무효판단기준 조화 추진
 - 법원과의 무효판단기준 견해차이, 새로운 무효증거제출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유·무효 판단이 반복되는 사례 발생
 - 심판관-판사 간의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 기준 조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법원과의 소통 확대

□ 침해소송절차에서 무효심판의 심결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소송절차 중지신청권 제도 개선 추진

-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통해 심판결과와 침해소송에서의 판단결과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

4.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을 조성한다.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 심판절차의 불편 해소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심판행정 서비스 제공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 작성을 위해 국립국어원 등과 협력 추진

-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지재권/기술 용어와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도록 심결문 작성요령 통일화

□ 심판 당사자·대리인 등의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해 지재권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확대

- 국민불편 사항 발굴을 위하여 심판 경험 있는 중소기업, 개인 등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등 대리인, 기업협회의 의견수렴 및 협조 강화를 통해 심판절차의 불편해소
- 그 외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 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과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추진

* '14.11.5 출범한 특허, 저작권 관련 전문변호사 협회(회원수: 500여명)

** 로스쿨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판례평석 공모대회 참여활성화 도모

□ 특허요건 판단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특허/상표분야 선진 5개국(IP5/TM5)의 심판원간 판단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심판원의 동북아 지재권 협력 강화
- 또한 미국, 유럽특허청 심판원과의 정보공유, 업무협력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및 심판관 교류 추진 예정

참고 1 심판청구 및 심판처리 현황

□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10	'11	'12	'13	'14
특허·실용신안	9,829	10,137	10,441	8,447	7,586
상표·디자인	5,359	5,746	5,778	6,059	5,726
합계	15,188	15,883	16,219	14,506	13,312
증가율(%)	△11.3	4.6	2.12	△10.6	△8.2

※ 복수디자인, 다류상표 기준

□ 심판처리기간 추이

(단위 : 개월)

구분	'10	'11	'12	'13	'14
특허·실용 (결정계/당사자계)	10.6 (11.0/9.0)	10.2 (10.8/8.4)	10.2 (11.0/7.3)	9.7 (10.7/6.1)	8.3 (8.6/6.9)
상표·디자인 (결정계/당사자계)	9.1 (10.5/7.8)	8.2 (9.2/7.2)	7.4 (8.4/6.5)	6.8 (7.6/6.2)	7.4 (8.1/7.0)
합계 (결정계/당사자계)	9.9 (10.9/8.3)	9.5 (10.3/7.7)	9.0 (10.2/6.8)	8.5 (9.8/6.2)	7.9 (8.4/6.9)

□ 심판품질 지표(제소율, 심결취소율)

구분	'10	'11	'12	'13	'14
제소율(%)	15.7	17.3	16.5	15.3	14.5
심결취소율(%)	21.3	22.6	22.8	20.9	25.4

* 제소율: (특허법원에 소제기 한 건수)/(특허심판원의 전체 심결건수)

* 심결취소율: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된 건수)/(특허법원 전체 판결건수)

□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구분	'10	'11	'12	'13	'14
한국 (무효인용건)/ (무효심판청구건)	53.1% 336/633	53.4% 374/700	52.1% 405/777	49.2% 317/644	53.2% 314/590
일본 (무효인용건)/ (무효심판청구건)	40.2% 102/254	35.1% 91/259	29.3% 73/249	20.4% 43/211	(미공표)

□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를 추이

구 분	'10	'11	'12	'13	'14
유효심결(심판원) ⇨ 무효로 번복(특허법원)	53.8%	61.1%	75.7%	56.4%	67.1%
무효심결(심판원) ⇨ 유효로 번복(특허법원)	11.1%	18.1%	17.0%	19.7%	21.6%

* 무효심판 심결 전체에 대한 항소율은 40~45% 정도이고, 이 중 30~40%가 심결취소

□ 매년 등록되는 총 특허건수 대비 무효심판에서 무효건 비율

구 분	'10	'11	'12	'13	'14
비율	0.49%	0.39%	0.36%	0.25%	0.25%
(무효건수)/ (등록특허건수)	336/68,843	374/94,720	405/113,467	317/127,330	314/125,420

참고 2 특허심판 업무 개요

□ 특허심판 종류

○ 결정계 심판

: 심사관의 심사결과(거절결정 등)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종류	의의	청구인
거절결정 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거절결정 받은 출원인
정정심판 (특실)	특허권자가 무효사유 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의 특허발명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심판	권리자

* 이외에도 심사단계에서 보정을 인정하지 않고 ‘보정각하’하는 경우 청구하는 보정각하불복심판이 있음(특허·실용신안은 2001. 7. 1이후 출원에 대해 폐지)

○ 당사자계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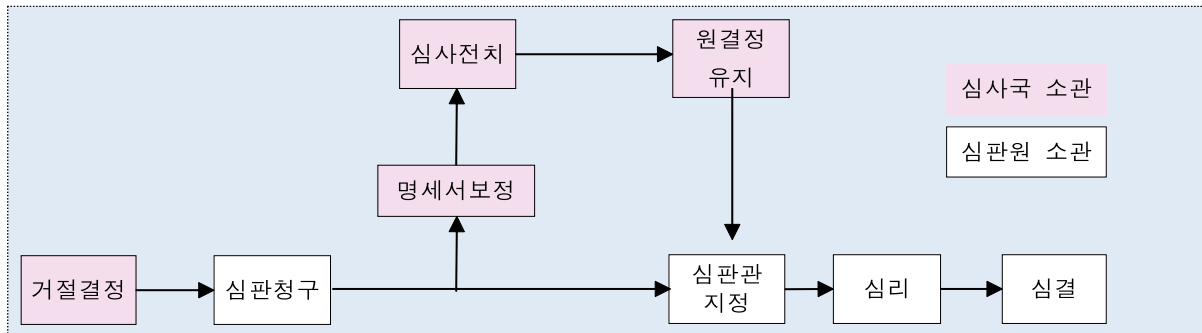
: 이미 등록된 권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종류	의의	청구인
무효심판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발명 등의 보호범위(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	적극: 권리자(전용 실시권자) 소극: 이해관계인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의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 등 취소사유 발생시 그 상표권을 소멸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	이해관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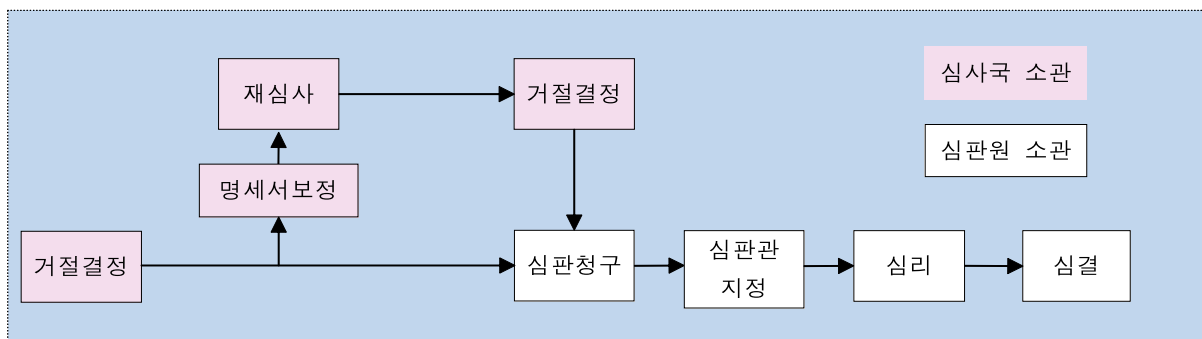
□ 특허심판 절차

○ 결정계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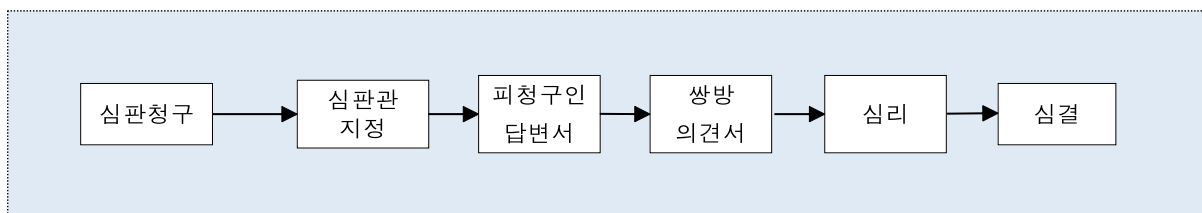
- 2009. 7. 1. 이전 출원: 심판청구 후 '심사전치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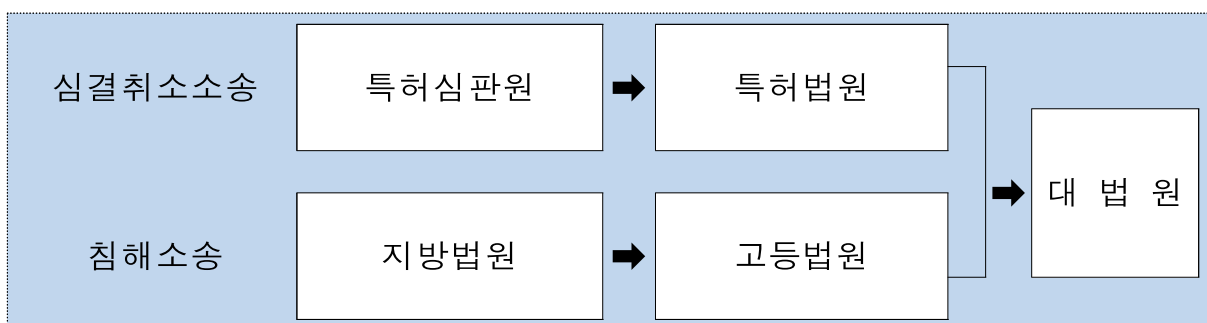
- 2009. 7. 1. 이후 출원: 심판청구 이전 '재심사 제도' 도입



○ 당사자계 심판



□ 특허소송 절차



*현재 침해소송 관할집중(1심: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 추진 중